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1. 12.



이 신 자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이신자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및 의원 윤리강령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3조, 안 제8조 및 안 제9조 등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 안 제5조 일부 조항 및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1214
----------	----------

발의일자: 2021. 11. 25.

발의자: 이신자,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김귀화, 조복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시행) 내용 반영 및 의원 윤리강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5조제1항)
- 「지방자치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안 제3조제4호, 제5조제5항, 제8조, 제9조제2호 및 제6호)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 1)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6조, 제98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4)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국가권익위원회)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본문 중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4조제6항 관련) 	경고
2. 겸직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3.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4. 품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 모욕, 폭언, 갑질 등 기타 품위손상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청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7. 회피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8. 회의무단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35조</u> 및 <u>제38조</u>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u>제43조</u> 및 <u>제46조</u> -----.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u>	4. <삭 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u>제35조 제1항</u>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	제5조(겸직신고) ① ----- 「지방자치법」 <u>제43조 제1항</u> -----.

임 후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② (현행과 같음)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

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제8조 <삭 제>

제9조(징계 등) -----

---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p><u>등을 할 수 있다.</u>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p> <p>1. (생 략)</p> <p>2. <u>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업권고를 거부</u></p> <p>3. ~ 5. (생 략)</p> <p>6. <u>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업권고를 거부</u></p> <p>7. 「<u>지방자치법</u>」 제36조(의원의 의무) 위반</p> <p><u><신 설></u></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삭 제></u></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삭 제></u></p> <p>7. 「<u>지방자치법</u>」 제44조----- -----</p> <p>8. 「<u>지방자치법</u>」 제43조 제6항 에 따른 사업권고를 거부</p>
---	---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협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 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 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의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

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위반

국가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

2019. 3.



국민권익위원회

I . 추진배경

- 지방의원 겸직신고, 가족 등 이해관계자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제한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등에 제도개선 권고('15.10.)
 - 겸직신고규정 구체화 및 신고내용 확인·검증,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등을 2016년까지 이행토록 권고
- 그러나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
 -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겸직신고 부실, 신고내용 검증 미비, 금지규정 위반 제재 미흡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

- ✓ 지방의원 4명 중 1명은 겸직신고 않거나 누락('18.11. 시민단체 보도자료)
- ✓ 신고하더라도 보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관행적으로 미수령으로 작성('18.12. 언론보도)
- ✓ 전남·충북·충남 지역 4개 지자체는 의원의 배우자 등 관계자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39차례, 7억1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체결('18.8. 감사원)
- ✓ 경북지역 시의원은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돼 사임권고를 받았으나 불응, 윤리 위원회에서도 제명이 부결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보조금 계속 수령('18.12. 언론보도)

- 이에 따라 지자체별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제도 실효성 제고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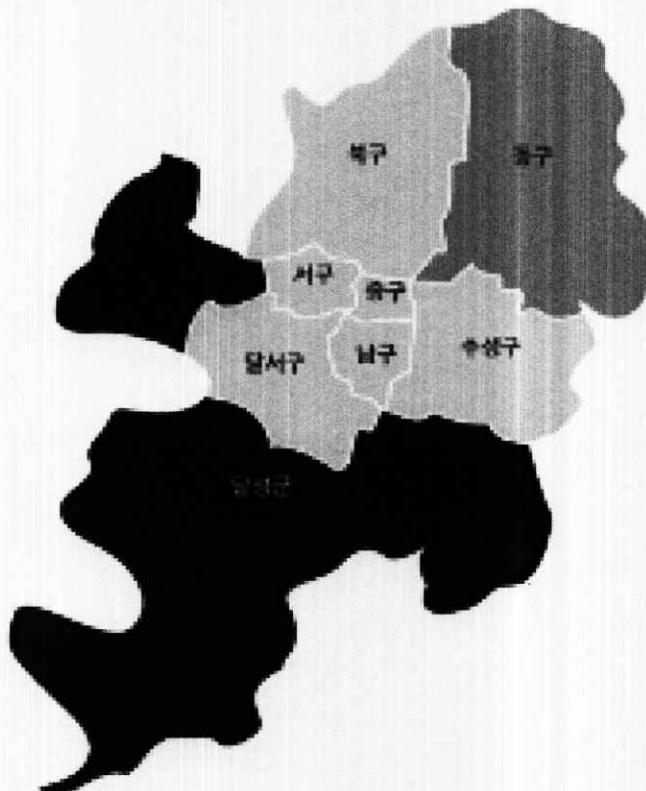
< 이행현황 점검 개요 >

- (점검기간) (1차) '18.8.27.~'18.10.31. (2차) '19.2.12.~'19.3.8. (현지점검 포함)
- (점검대상)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에 대한 243개 지자체 제도개선 실적
- (이행기준) 권고시점인 '15.10. 이후 주요 권고내용의 조례·규칙 반영여부
 - 구체적 수행업무, 영리 여부, 보수수령액 등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 겸직신고내용 확인·점검 및 공개
 -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신고 및 관리
 -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및 관리인 겸직 시 사임권고 명시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 시 징계기준 및 절차 마련

II. 이 행 현 황

권역별 기초의회 이행현황

대구



▶ 이행완료 : 1개

달성군

▶ 일부이행 : 1개

동구

▶ 미이행 : 6개

남구, 달서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 이행완료 ■ 일부이행 ■ 미이행

□ 겸직 등 금지규정 현황

○ (겸직금지) 겸직금지의 직 외에 겸직하는 경우 신고(지방자치법 §35③)

- 당선 전 사항은 임기개시 1개월 이내, 임기 중 취임 시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 (방법·절차 조례위임)

<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대상 >

지방의원(지방자치법 §35①)	국회의원(국회법 §29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직신고 전제로 겸직허용, 9개호 금지• 겸직금지 : 국회의원, 지방의원, 현재재판관, 선관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각 협동조합 임직원, 대학교수와 같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등• 겸직신고 : 위 각호의 직을 제외한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허용• 예외허용 :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법률에서 허용한 직, 정당의 직• 겸직신고 : 당선전, 임기중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직

○ (영리행위 금지)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 금지(지방계약법 §33①)

- 지방의원의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체결 불가
-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이 될 수 없음(지방자치법 §35⑤)
-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불가(지방자치법 §35⑥, 범위 조례위임)

○ (청렴의무) 지방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 유지(지방자치법 §36②)

-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에 대하여 사임권고 가능(지방자치법 §36④)
-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 징계 가능(지방자치법 §86)

*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 회부(§87),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이 있으며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88)

III. 제도개선 주요 권고내용

구 분	권고과제
① 겸직신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신고를 규정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겸직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기존규정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신고 내용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업무, 자영업 등 겸직신고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수행업무, 영리성·보수수령 여부, 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겸직사실 없는 경우 '겸직사실없음 내역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한 내 겸직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신고 안내 강화 - 신고사항 확인절차 및 부정확신고 처리절차 신설 - 변경사항은 즉시 신고, 연 1회 겸직신고 안내·점검 실시 -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신고내용 공개 (권장)
② 영리거래 금지 적극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관련한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서식 마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신고하고 연 1회 신고현황 점검 -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담당자의 검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등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단체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자체 사무위탁 기관, 운영비·사업비 지원기관의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규정 -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은 '관리인'으로서 겸직금지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단체의 관리인 겸직 시 사임권고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규정 위반 시 사임권고권 적극 시행 -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등 징계사유 및 제재방안을 규정하고 윤리특위 구성운영, 절차 등 실질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겸직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 설정